

제26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가양 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가양 4종 합 사회 복지 관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
수석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4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2. 제안이유

-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(재)M&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: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
- 위탁기간: 5년
- 위탁근거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

나. 추진일정

- 2020. 3월: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
- 2020. 4~5월: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
- 2020. 6월: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나. 예산조치: 운영비 연1,022,760천원(시비 100%)

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수행하는 (재)M&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운영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**사회복지사업법**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